

카카오뱅크와 함께하는 가족돌봄아동지원사업 안내문

1. 사업명: 카카오뱅크와 함께하는 가족돌봄아동 지원사업

2. 사업목적

경기권역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보호자의 질병, 장애, 고령, 언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구성원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아동)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3. 사업개요

가. 지원목적: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돌봄 아동 및 청소년 발굴·지원을 통한 돌봄 부담 완화

나. 지원대상: 2025년도 기준 경기지역본부 관할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2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 20명

1)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체크리스트

기본조건		체크
1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나이가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input type="checkbox"/>
2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이 현재 경기지역본부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가? <small>** 관할 시군 : 과천, 광주, 군포, 성남, 수원, 안성, 안양,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이천, 의왕, 평택, 하남, 화성</small>	<input type="checkbox"/>
3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돌봄을 받고 있는 가족이 1)* <u>민법상(768조) 가족</u> 에 해당하는가? (단, 자녀돌봄 제외)	<input type="checkbox"/>
4	대상자가 가족구성원의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현재 (2025년 기준) 가사·간병 등의 가족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돌봄을 받고 있는 가족이 장애, 정신·신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인가?	<input type="checkbox"/>

가족돌봄 활동의 예시

1	장애, 질병, 정신건강 및 알콜중독 등 어려움에 처한 가족 구성원을 직접적으로 간병하고 돌보는 아동·청소년
2	고령의 조부모, 장애 혹은 질환을 가진 부모에 대해 돌봄이나 생계 문제로 부모를 돌보는 아동·청소년
3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이주민 2세대 가정에서 부모의 통역사 역할을 하는 아동·청소년
4	부모를 대신해 가사를 담당하거나 어린 동생을 돌보는 아동·청소년
5	가사 경제를 위해 노동(아르바이트, 일용직)을 해야 하는 아동·청소년
6	보호자의 제대로 된 역할 어려움으로 학업 유지가 어렵거나 발달 단계에 맞는 양육환경을 제공받기 어려워 가족돌봄아동이 될 위험성이 높은 아동·청소년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사례 예시

- 부모의 서툰 한국어로 인해 각종 공과금 납부는 물론 사소한 장비기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현아
- 부모의 장애로 가족의 손발이 되어 가사일을 돕는가 하면 병원 동행과 주민센터 행정 신청 등 외부활동 지원까지 돕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진수
- 고령의 조부모로 인해 대학을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거리를 오가며 조부모의 건강과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교 1학년 민기
- 엄마가 주 2회 저녁 8시까지 야간근무를 할 때면 8살 어린 동생의 저녁밥은 물론 학교 숙제도 도와주며 주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11살 다현이
- 모의 심한 우울증으로 바깥출입이 어려운 모를 대신해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는 고등학생 송이
- 요양병원에 계신 조모를 매주 일요일마다 간병을 돕고 있는 대학교 2학년 주아
- 조부모와 수급비로만 생활이 어려워 매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도훈이

4. 지원내용

가. 돌봄지원금 (아동 1인당 3,000,000원)

구분	지원금액	지원항목
아동 돌봄 지원금	최소 1,5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아동 당사자에게만 쓰이는 자기돌봄지원금 ▪ 아동 문화여가비, 학원비, 심리상담비 등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 가능
가족 돌봄 지원금	최대 1,5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아동 가정 생계비 ▪ 보호자 의료비, 간병비, 가사돌봄서비스 등

※ 아동돌봄지원금과 가족돌봄지원금을 포함하여 총 300만원 지원함.

아동돌봄지원금은 최소 150만원, 가족돌봄지원금은 최대 150만원까지만 신청 가능함.

후원금 사용 계획에 따라 지원한도 내에서 금액 조정하고 신청.

1) 민법 768조: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부모 및 부모의 형제자매, 조부모, 나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나. 가족돌봄아동 자조모임

- 1) 정보 교류 및 심리정서적 지지체계 제공
- 2) 문화·여가 체험 기회 제공
 - . 가족돌봄아동 지원사업 참여자가 원하는 활동으로 구성
(2024년 활동 : 베이킹 클래스, 헤어·메이크업 및 증명사진 촬영, 뮤지컬 관람 등)
- 3) 가족돌봄아동 캠프(8월)
 - . 가족돌봄아동의 자기 돌봄을 위한 1박 2일 캠프(추후 안내)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모집									
서류 심사 및 면접									
최종선정 안내									
OT									
자조모임									
가족돌봄 캠프									
최종평가회									

5. 신청 및 접수

가. 신청대상: 경기지역본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가정, 중위소득 100% 이내 저소득 가정 아동 우선 선발)

나. 신청기간: **2025. 03. 26 ~ 2025. 04. 18**

다. 신청방법: 학교, 관공서,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서 신청 가능 (개인 직접 접수 불가)

라. 접수방법: 사업 담당자 이메일(khay@childfund.or.kr)로 서류 제출

마. 신청서류:

구분	서류
필수	- 카카오 가족돌봄아동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처리 및 초상권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저소득 관련 증빙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감감대상증명서, 법정한부모가족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가구원 소득자 모두)

* 선정된 아동은 추가 서류(지원금 사용 및 반납 동의서, 결과보고서 등) 안내 예정

라. 1차 선정 안내일 : **2025. 04. 23 (수)**

마. 줌 면접 심사일 : **2025. 04. 28 (월) ~ 30 (수)**

바. 최종 선정 안내일: **2025. 5. 9 (금)**

※ 지원대상자 OT(필수), 최종 평가회(필수)와 자조모임(1회 이상) 필참

6. 후원금 지급 일정

구분	일정
1차	2025. 06
2차	2025. 09

7. 지원금 지급 및 관리

가.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

(보호자 계좌로 지급 가능,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경우 추천 기관으로 지급 가능)

나. 지원금 관리

1) 지원금 사용기간: 2025. 11. 28 (금)

(사용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환수 조치하여 이후 지원이 필요한 타 아동에게 지원함)

2) 지원결정 이후 추천 및 관리기관에서는 아동 및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지원금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도.감독

다. 지원금 반납 및 제재

1) 지원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원금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 잔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함

2) 다음의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지원금 잔액 반납

- . 아동 사망 시(단, 지원 결정일로부터 사망일까지 발생한 의료비는 집행가능)
- . 선정 이후 동일한 내역으로 타 기관에 의해 중복지원이 된 경우
- . 아동 및 그 가족이 3개월 동안 연락이 두절된 경우
- .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 . 기타 사정(구속, 수감 등)으로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등

3) 어린이재단 후원금이 지원 사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동보호정책 위반할 경우 후원금 감액, 중단, 환수조치할 수 있음.

- . 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요청한 경우
-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단에 지원을 과하게 요청한 경우
- . 목적 외 사용: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등의 지원 사유와는 다르게 후원금을 사용해 아동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 . 지원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경우,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조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되어 후원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기 어려운 경우

8. 문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옹호사업팀 김하영 (☎ 031-234-2352, 내선 2120)